# 企業經營에 있어 特許管理 중요성과

##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및 企 內의 職務發明

〈前號에서 계속〉

### 3. 職務發明管理

企業은 사내의 特許專擔部署나 研究開發部署와는 별도로 또는 特許專擔部署와 함께 職務發明管理委員會를 설치하여(대기업으로서 사업부체제를 갖춘 경우나 공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각사업부나 공장 또는 분공장 및 研究所 단위로 職務發明管理分任委員會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종업원의 근무규정이나 취업규정(또는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職務發明規程을 따로 두고 있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 중 회사에 양도하는 發明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權利의 귀속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직무발명을 權利化하기 위한 出願節次라든가 해당 發明者에 대한 포상금을 정하는 기준과 그 지불방법 共同發明者에 관한 규정,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職務發明 등에 대한 위원회(회사)의 조치에 대한 異議申請,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 회사 자체의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이와 같은 職務發明規程은 職務發明管理委員會 또는 特許專擔部署가 관리하고 있으며, 職務發明管理委員會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特許專擔部署가 그 사무국기능을 맡아 함이 바람직한 바 職務發明管理委員會야말로 特許關係部署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特許專擔部署 또는 관계部署를 조정·리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企業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工業所有權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외부로부터 權利를 양수받는 등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職務發明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職務發明管理는 企業內의 一般特許管理와 함께 企業의 技術革新을 위한 모체가 되며 職務發明管理는 企業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提案制度중 항시적이며 가장 체계화가 잘 된 관리조직중의 하나이다.

### 4. 職務發明管理委員會

職務發明은 企業內의 여러가지 提案制度 중 비교적 항시적이며 체계화가 잘 된 制度라는 것은 이미 여러번 다룬 바 있다. 職務發明制度를 제외한 여타 제안제도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한 제안에 대해서 1회의 평가만을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특별히 체계화되지도 않은 것이 통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職務發明문제는 이것이 研究開發要員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닐 뿐 아니라 현장생산 Line에서도 문제가 되며 더우기 특정한 기간내에 일시적으로만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 문제가 다수종업원의 업적과 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계선조직이나 참모조직에 맡기는 것보다는 여러분야와 각층의 실무자, 관리자 및 경영자가 자리를 함께 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

# 그 方案(完)

## 체계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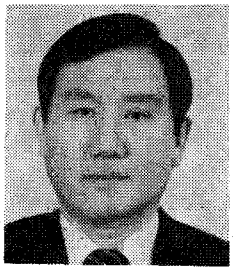

金 允 培
〈辨 理 士〉

論壇解說

目 次

Ⅰ. 企業經營과 特許管理
Ⅱ. 特許管理와 特許專擔部署
Ⅲ. 特許管理와 企業內 職務發明체계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職務發明管理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事案까지도 논의하여 때에 따라서는 특허관계부서와 각 관계부서를 조정하고 리드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기업내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 있는 기구 중의 하나로 키우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 5.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組織

企業內 職務發明 또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職務發明管理委員會(審査委員會보다는 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성격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하 「管理委員會」라 칭하고자 한다)는 기업의 규모, 업무범위 및 조직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편의상 이를 중앙위원회와 분임위원회로 나누어 논의코자 한다.

〈中央職務發明委員會〉

이는 企業內의 전반적인 工業所有權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職務發明規程을 관리하고 特許專擔部署와 각 關聯部署를 조정·리드할 뿐만 아니라 산하의 각 사업부, 공장 또는 分工場 및 硏究所 등에 산재한 각급 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여 각급분임위원회에 업무지침을 내리기도 한다. 나아가서 中央職務發明管理委員會는 職務發明의 산출물인 技術을 판매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또 최고경영자의 이 분야에 대한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관리능률상 바람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職務發明管理委員會를 구성만하여 놓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첫째, 위원회의 조직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통상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경영자인 사장급 또는 중역진과 관련부서의 장 등 최고급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企業內의 일반개선조직원이 집합한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다른 업무에 쫓겨 정작 위원회 일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둘째, 위원회가 취급할 대상이 없고 위원회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정작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설치목적은 職務發明을 審査하고 이를 管理하는데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으나, 막상 그 대상이 되는 職務發明이 없거나 아주 적어 委員會를 열 필요도 없으며 또 할 일도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회가 방향감각을 되찾아 위원회자신이 할 일을 찾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종업원이 이룩해 놓은 發明을 審査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좋은 發明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발명을 할 수 있는 企業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바빠야 하고 또 일을 많이 해야 한다. 職務發明管理委員會가 글자 그대

로 종업원이 한 發明을 審査만 하는 것은 아니며 發明내용에 대한 審査는 職務發明委員會의 소관이라기 보다 일차적으로는 관련部署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로서 다만 職務發明管理委員會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가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해체하든지 해야지 그냥 존속시키는 것은 기업조직관리상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훈련된 전문요원이 없다.

위원회가 너무 고급화되어 있거나 관련부서 본위로 하다보니까 職務發明에 관한 깊은 의견을 가진 훈련된 요원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원회는 문외한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훈련된 요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職務發明管理委員會는

첫째,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실제 위원회에의 출석이 용이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둘째, 각 관련部署의 요원을 망라한다.

셋째, 中央委員會는 정책部署를 겸하여야 함으로, 되도록이면 기획 및 開發分野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요원까지도 참여토록 한다.

넷째, 위원회구성원중 研究·技術職과 管理職의 구성비를 합리화한다.

다섯째, 위원회구성원의 계층을 다양하게 하여 고급간부로부터 실무자까지를 망라한다.

여섯째, 위원회에 잘 훈련된 전문요원을 참여케 한다.

일곱째, 간사 또는 사무국조직을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분임職務發明管理委員會〉

企業內 中央職務發明委員會가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여 해당기관의 職務發明을 관리운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분임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업무 및 그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바

**(1) 工場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

이는 공장전반에 걸친 職務發明管理를 하며 分工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급의 分工場分任職務發明管理小委員會를 조정 감독한다.

**(2) 分工場分任職務發明管理小委員會**

이는 분공장과 통합하기 어려운 여건하의 분공장이나 대규모공장의 생산Line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직접 종업원인 發明者 등의 職務發明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3) 事業本部 또는 事業部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

이는 大企業으로서 사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업무성격상 각사업부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설치한다.

**(4) 研究所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

企業內에 中央研究所가 있거나 本研究所가 있는 경우에는 研究所가 갖는 성격상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각 研究所마다 職務發明管理委員會를 설치운영한다.

일반적으로 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는 中央委員會가 맡아하고 있는 관련문제에 관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능 대신에 직접 종업원인 發明者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서로 협의하여 실무를 해결하고 또 조정·리드하는 역할을 맡아하는 하급위원회로서 설치되고 운용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役割

職務發明管理委員會는 企業의 工業所有權 및 기술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최고의사를 결정함은 물론 일반제안제도의 관리에 대한 지침도 아울러 취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職務發明管理委員會가 수행해야 될 임무로서는

첫째, 企業內工業所有權問題에 대한 기본지침을 정하는 일

둘째, 職務發明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세째, 직무발명의 特許性을 판단하여 이를 特許로 出願하여 登錄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 또는 감독하는 일

네째, 職務發明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

다섯째, 職務發明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 異議申請을 심의하는 일

여섯째, 技術販賣(特許權양도, 實施權허여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일곱째, 일반제안제도를 채용하여 非職務發明에 속한 종업원의 發明을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하는 일

여덟째, 特許專擔部署와 관련部署와를 조정·리드하는 일

아홉째, 職務發明규정의 改正 및 운영과 下級分任職務發明管理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감독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임무를 맡아하는 職務發明管理委員會는 企業內의 工業所有權問題와 대외기술판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특별참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종업원에게 발명 및 研究創作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企業發展에 기여토록 조정·리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 7.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정책참모기능

特許專擔部署와 함께 職務發明研究委員會는 職務發明管理 또는 提案制度管理에 의하에 기업이 자체내에서 研究發展시킨 각종 工業所有權 등 여러가지 기술중 自社에서 쓰고 남은 것이거나 불필요한 품목은 이를 산업사회 일반에 개방 판매하는 企業의 새로운 신종상품으로서 技術을 선별하여 시장에 내놓은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을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企業으로 부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ㅁ〉


新 刊 案 內

特許專擔部署 業務指針書
저 자 : 金 允 培 변리사
규 격 : 국판 320면
가 격 : 10,000원

工業所有權 지식
저 자 : 鄭 崇 連 변리사
규 격 : 4×6판·264면
가 격 : 2,3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자료판매센터



# 新 刊 案 內

## 新 特 許 法
저자 : 辨理士 南 啓 榮 외 3人
규격 : 국판 512면
가격 : 8,300원

## 工 業 所 有 權 法 要 解
저자 : 辨理士 金學濟·金延洙 공편
규격 : 국판 734면
가격 : 9,000원

## 改正工業所有權法 해설
저자 : 特許廳 金 憲 來 저
규격 : 국판 154면
가격 : 3,500원

## 商 標 法
저자 : 辨理士 李 秀 雄 저
규격 : 국판 552면
가격 : 9,500원

## 國 際 工 業 所 有 權 法
저자 : 辨理士 金 永 吉 저
규격 : 4·6배판, 1,664면
가격 : 74,000원

改 正 版
## 商 標 法 解 說
저자 : 金 寬 衡(本會 研修部長)
규격 : 국판 480면
가격 :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